

● 물질이전동의서

* 이 동의서는 생물자원센터(KCTC)에 의해 제공된 생물자원의 이용, 취급, 분양에 적용된다.

제 1 조 (생물자원의 사용범위)

- ① 생물자원센터(KCTC)로부터 피분양된 생물자원은 연구 및 시험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.
- ② 연구성과물기탁 자원의 경우 피분양자가 그 자원 및 파생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기탁자와 상호 협의해야 한다. 그리고 그 결과는 생물자원센터(KCTC)에 통보해야 한다.

제 2 조 (분양자격)

- ① 생물자원센터(KCTC)는 생물자원센터(KCTC)의 분양절차에 따라 생물자원을 분양요청하는 개인이나 기관(이하 피분양자라 한다)에 생물자원을 분양할 수 있다.
- ② 피분양자는 다음 각 호에 동의해야 한다.
 1. 생물자원의 수입, 취급, 수송, 저장, 이용 또는 오용에 대해 국내외 법률과 가이드라인의 준수에 동의해야 한다.
 2. 분양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3. 분양받은 생물자원의 제 3자 분양금지에 동의해야 한다.

제 3 조 (일반기탁 자원의 분양)

- ① 일반기탁으로 기탁된 공인자원의 경우는 조건 없이 정보공개 및 분양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4 조 (특허기탁 자원의 분양)

- ① 생물자원센터(KCTC)는 특허기탁 자원에 대해서는 원기탁자나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제 3자에게 생물자원을 분양할 수 있다.

이 경우 제 3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하는 서명된 계약증서를 생물자원센터(KCTC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 1. 생물자원센터(KCTC)는 제 3자의 성명, 기관명, 주소, 전화번호, 팩스번호, 전자메일 및 기타 생물자원센터(KCTC)가 요청한 정보를 원기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.
 2. 원기탁자의 허가 없이 다른 제 3자에게 생물자원을 분양할 수 없다.
 3. 생물자원의 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가능하다.
 4. 피분양자는 분양된 생물자원을 원기탁자의 허가없이 또 다른 제 3자에게 이전하여 원기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.

제 5 조 (연구성과물기탁 자원의 분양)

- ① 연구성과물기탁 자원으로 기탁된 경우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분양 시에는 원기탁자에게 분양결과를 통보한다.
- ② 기탁자의 요구에 의해 일정기간 공개가 유보된 연구성과물기탁 자원은 정보가 공개된 후 분양한다.
- ③ 연구성과물로 생산된 자원을 일반기탁이나 특허기탁으로 기탁한 경우는 제 3조 와 제 4조에 따라 분양한다.

제 6 조 (생물자원의 보증)

- ① 생물자원센터(KCTC)는 분양한 생물자원이 생물자원센터(KCTC)에서 발송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(이하 “보증기간”) 동안 생존력과 순도를 보증한다.
- ② 제 6조 제 1항에 제시된 보증기간은 분양된 생물자원에 부착, 혹은 표기된 유효기간에 의하여 변동되지 아니한다.
- ③ 생물자원이 피분양자에게 운송되는 동안 파손, 부분 분실되었거나 또는 피분양자가 생물자원을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, 생물자원센터(KCTC)는 상기 보증기간 내에 파손 혹은 분실에 대한 피분양자의 보고 접수를 조건으로 대체 생물자원을 피분양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.
- ④ 생물자원센터(KCTC)는 제 6조 제 3항에 의한 대체 생물자원의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재량에 따라 대체 생물자원의 제공대신 수수료의 반환을 선택할 수 있다.
- ⑤ 생물자원센터(KCTC)는 분양된 생물자원의 생존력과 순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, 피분양자가 분양받은 생물자원을 생물자원센터(KCTC)가 제공한 실험방법에 따라 취급하였을 경우에만 무상분양 또는 환불을 할 수 있다.
- ⑥ 생물자원센터(KCTC)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다.
 - 1. 제공되는 생물자원에 존재할 수 있는 제3자의 특허, 상표, 저작권 및 기타 침해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권리
 - 2. 제공되는 생물자원의 특정 혹은 통상의 용도에의 적합성의 여부
 - 3. 제공되는 생물자원의 안전성 (기탁자에 의해 관련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)
- ⑦ 생물자원센터(KCTC)는 생물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방법 및 기타 관련된 기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용방법 혹은 기술정보에 대해서 보증하지 않는다.
- ⑧ IATA 국제 안전성 규칙 (International Safety Regulations)에 따라 생물자원을 포장하여 배송한다.

제 7 조 (분양된 생물자원에 대한 생물자원센터(KCTC)의 책임한계)

- ① 피분양자는 생물자원의 잠재적 혹은 현존하는 위험 및 필요한 주의의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물자원을 취급할 의무가 있으며, 생물자원센터(KCTC)는 피분양자가 생물자원의 수령, 취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피분양자 및 제 3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 및 상해에 대하여,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.
- ② 제 6조 제 3항과 제 4항에 따라 생물자원센터(KCTC)에 대하여 요청 가능한 배상범위는 해당 생물자원에 대하여 지불된 수수료의 반환 또는 생물자원의 대체 공급에 한정되며, 생물자원센터(KCTC)는 재량으로 적절한 배상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.
- ③ 생물자원센터(KCTC)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한 경우라도 직접적 손해액 외에는 배상책임이 없으며, 생물자원센터(KCTC)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오로지 생물자원에 대해 지불한 비용에 한한다.

제 8 조 (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와 생물다양성협약)

- ① 피분양자는 컨퍼런스, 논문, 출판물, 특허출원 등 분양받은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얻게 될 경우 생물자원의 출처로서 생물자원센터(KCTC)를 기재해야 한다. 또한, 지식재산권 또는 분양받은 생물자원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피분양자에게 허가되지 않는다.
- ② 생물자원센터(KCTC)는 원기탁자의 요청 시 생물자원의 피분양자에 대한 신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
- ③ 피분양자는 본 동의서에서 언급한 생물자원 사용범위의 제약에 대해 인정하고 동의한다.
- ④ 피분양자는 생물자원의 출처에 대한 승인과 모든 출판물에 대한 권리를 생물자원센터(KCTC) 및 기탁자가 갖고 있음을 생물다양성협약(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, CBD)과 MOSAICC (Micro-Organisms Sustainable use and Access regulation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, TRIPs 제 29조에 따른 국제규정)에 따라 동의해야 한다.
- ⑤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및 제 3자의 배상청구(물질수령, 취급, 보관, 이동, 처분, 사용, 오용 기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 포함)에 대한 모든 책임은 피분양자에게 있다.

제 9 조 (수수료)

- ① 생물자원센터(KCTC)는 분양절차에 따라 생물자원에 대한 분양 수수료의 입금을 확인한 후 생물자원을 분양한다.

제 10 조 (피분양자의 의무 및 책임)

- ①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생물자원이 적합한 시설과 생물자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

숙련자에 의해 사용될 것임을 보증한다.

- ② 피분양자는 생물자원센터(KCTC)로부터 분양받은 생물자원의 취급에 있어 대한민국의 법률, 규정, 가이드라인 등을 따라야 한다. 또한 피분양자가 재외자의 경우는 생물자원취급에 대해 각국의 법률과 가이드라인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③ 피분양자는 생물자원센터(KCTC)로부터 분양받은 생물자원을 제 3자에게 재분양, 이전, 양도할 수 없다.
- ④ 생물안전위험군2등급의 생물자원을 분양받은 피분양자는 “생물안전위험군2등급 생물자원 인수증”을 생물자원을 받은 즉시 생물자원센터(KCTC)에 회신하여야 한다. 피분양자는 생물안전위험군2등급으로 지정된 생물자원이 상황에 따라서 병원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.
- ⑤ 피분양자는 분양된 생물자원의 수령, 취급, 저장, 폐기, 사용 및 오용에 대한 모든 위험성방지 및 생물자원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.
- ⑥ 피분양자가 연구성과물기탁 자원을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탁자의 사전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⑦ 피분양자는 생물자원의 수입 및 배포와 관련된 해당 국가의 검역 및 생물안전성 법률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- ⑧ 피분양자는 생물자원 수령을 위해 필요한 모든 허가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, 생물자원센터(KCTC)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생물자원센터(KCTC)에 제출해야 한다.
- ⑨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생물자원에 대한 지식재산권, 제3자에게 양도금지, 생물자원의 사용 범위 등이 물질이전동의서에 명시된 범위로 제한된다.
- ⑩ 피분양자는 분양받은 생물자원의 이용에 관련된 배상청구, 소송, 손해 또는 비용으로부터 생물자원센터(KCTC)의 면책을 보증한다.
- ⑪ 피분양자는 생물자원의 물질이전동의서의 위반 및 지식재산권 침해로 발생된 배상청구 및 모든 손해에 대해 생물자원센터(KCTC)에게 배상해야 한다. 손해 배상에는 생물자원의 수령, 취급, 보관, 이동, 폐기, 이용 또는 오용에 대한 것을 포함한다.

제 11 조 (연구성과물기탁자원의 권리배분)

- ① 기탁된 연구성과물기탁 자원에 대한 권리 배분은 주관연구기관(기탁자) 및 최종사용자(피분양자)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제 12 조 (피분양자의 물질이전동의서 위반)

- ① 생물자원센터(KCTC)는 피분양자가 위의 동의 의무를 고의적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 더 이상의 생물자원 분양을 거부할 수 있다.

